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15.12.21. 규칙 제698호
개정 2020. 2.19. 규정 제814호
2022. 1.14. 규정 제869호
2023. 3. 7. 규정 제88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7조의2에서 위임한 등록금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교직원 2명, 학생 3명(대학원생 1명을 포함한다), 관련 전문가 1명, 학부모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하고,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14.>

② 교직원 위원은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22.1.14.>

③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2명, 대학원 원우회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 대표와 학생 측 대표가 협의하여 경제·경영·회계·법률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1.14.>

⑤ 학부모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책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책의 임용(재직)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3.3.7.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3.7.>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 개최는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2. 19.>

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3.7.>

제4조의2(회의록 공개)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생년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[본조신설 2020.2.19.]

제5조(자료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그 요청을 받은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삭제 <2023.3.7.>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재무팀장이 된다.

제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제698호, 2015. 12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814호, 2020. 2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869호, 2022. 1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885호, 2023. 3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